

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4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대중교통 이용이 취약한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행중인 희망택시사업 지원 대상자의 택시이용 부담요금을 평창군 농어촌버스 요금으로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6조제2항 별표1의 이용자 부담요금 : 1,400원 ⇒ 1,000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2025년 희망택시 사업예산에 반영계획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24. 8. 27. ~ 2024. 9. 1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- 평창군 공고 제2024-1225호, 안전교통과-21190(2024. 8. 26.)호

- 2) 규제심사 : 규제사무 없음 [기획예산과-3123(2024. 8. 21.)호]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 [기획예산과-3123(2024. 8. 21.)호]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사항 없음 [가족복지과-6899(2024. 8. 22.)호]
- 5) 법제심사 : 적정 [기획예산과-4599(2024. 9. 20.)호]
- 6)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: 원안의결[기획예산과-4934(2024. 9. 26.)호]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4조의 이용자(탑승자) 부담요금란 중 “1,400원”을 “1,000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희망택시 이용자 부담요금(제6조제2항 관련)

대상	이용자(탑승자) 부담요금
제4조 대상자	○ 1,000원(4인까지 이용 가능)

관계법령 발취

[지방자치법]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곤궁(困窮)한 자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심신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보건진료기관의 설치·운영

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
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
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
자. 청소, 오물의 수거 및 처리

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
비용추계서 미침부 사유서 (제3조제5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

- 희망택시 이용자 부담요금 인하에 따른 지원금 증가
- 소요금액 : 500명 × 8회 × 700원 × 12월 = 33,600천원/년

2. 미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 중 제1호

3. 미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의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도시안전국 안전교통과장 이시균
연락처	(033) 330 - 2019